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70
----------	-------

발의연월일 : 2019. 11. 4.

발의자 : 정운천 · 김성찬 · 이양수
경대수 · 황주홍 · 윤준호
손금주 · 오영훈 · 손혜원
김태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는 한”을 “없으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19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2항).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함유되거나”를 “포함되거나”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검정에”를 “검정을”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영업정지처분에”를 “영업정지처분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u>함유되거나</u> 잔류된 것	-----.
2. ~ 7. (생 략)	1. -----
(② · ③) (생 략)	-----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	---포함되거나---
(②)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u>검정에</u> 같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
제26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	(②) (현행과 같음)
	(③) -----

	---검정을-----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과징금처분) ① -----

